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의회

제9대 양평군의의회

전반기

Yangpyeong county council



양평군의의회

www.ypcouncil.go.kr

C O N T E N T S

| | |
|----------|----|
| 목표와 비전 | 03 |
| 의회 연혁 | 04 |
| 일반 현황 | 06 |
| 의회 구성 | 08 |
| 의회의 기능 | 09 |
| 의회의 역할 | 10 |
| 의회의 권한 | 12 |
| 의회 운영 | 15 |
| 의회 회의 | 16 |
| 의안처리 절차 | 17 |
| 방청·청원·진정 | 18 |
| 의회 안내 | 19 |

제9대 양평군의회 안내책자(전반기)

| | |
|------------|--|
| 발행일 | 2022년 9월 |
| 발행처 | 양평군의회 |
| 주소 |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
| 홈페이지 | www.ypcouncil.go.kr |
| 디자인편집 및 인쇄 | 삼진인쇄소 |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신뢰의정

- 투명한 인사운영
- 신속한 의정 홍보
- 열린의회실 운영

내실의정

- 회기운영 계획수립
- 정책협의회 운영
- 주요업무 보고

현장의정

- 주민 불편 해소
- 현장 위주 의정활동
- 담당읍·면제 실시

전문의정

- 안건의 검토 심사
- 맞춤형 교육 역량 강화
- 선진지 탐방

의회 연혁

제1대
양평군의회
1991. 4. 15. ~
1995. 6. 30.

1991. 4. 15.
제1대 전반기
개원 및 원구성
(의장 조병훈, 부의장 정인영)

1993. 4. 9.
제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이광남, 부의장 정인영)

1995. 3. 27.
제1대 후반기
의장단 보궐선거
(의장 이병영, 부의장 김영수)

제2대
양평군의회
1995. 7. 1. ~
1998. 6. 30.

1995. 7. 10.
제2대 전반기
개원 및 원구성
(의장 장재찬, 부의장 박용직)

1997. 1. 8.
제2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장재찬, 부의장 황일성)

제3대
양평군의회
1998. 7. 1. ~
2002. 6. 30.

1998. 7. 7.
제3대 전반기
개원 및 원구성
(의장 김영구, 부의장 고기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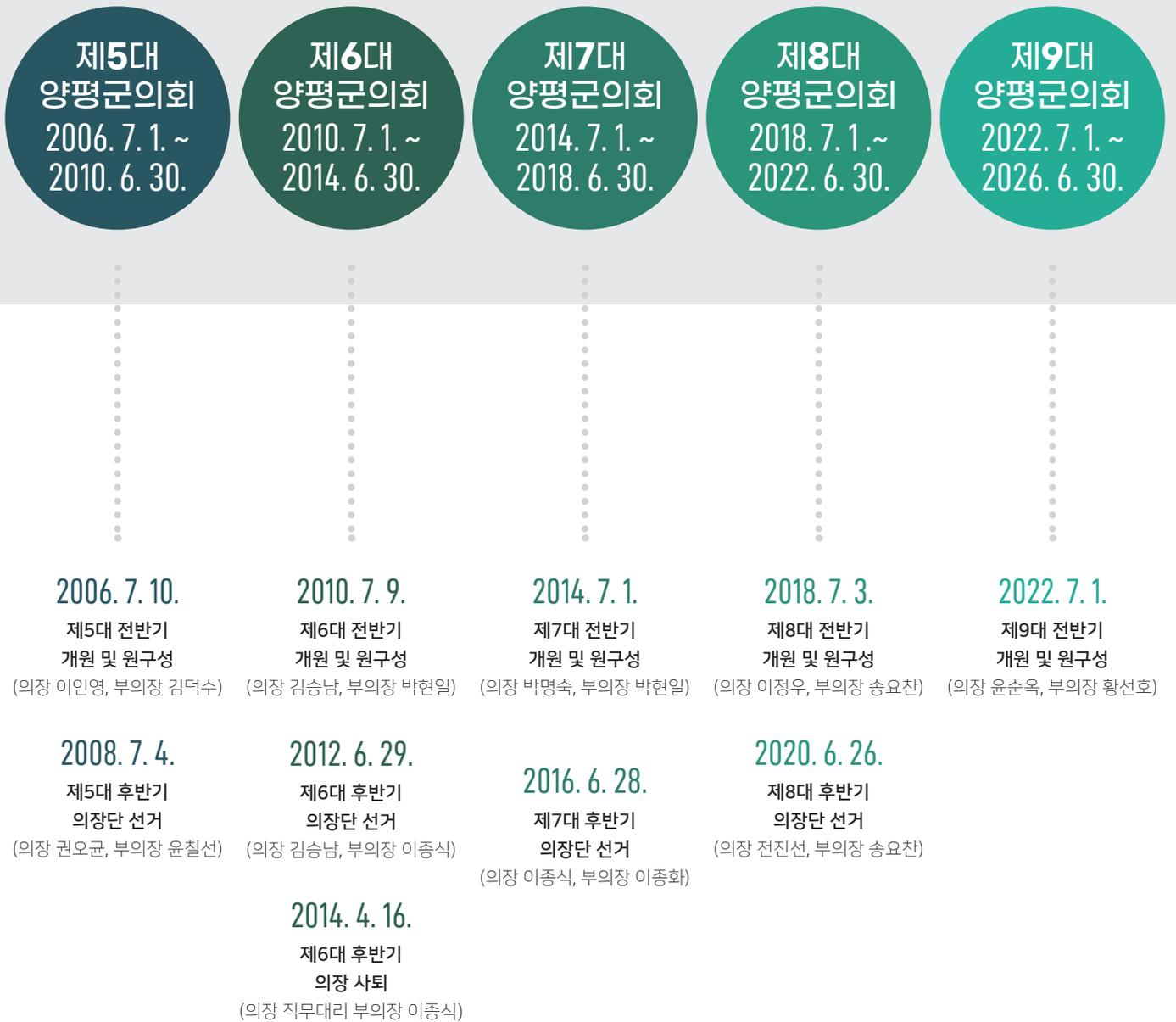
2000. 6. 30.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정운상, 부의장 박정철)

제4대
양평군의회
2002. 7. 1. ~
2006. 6. 30.

2002. 7. 5.
제4대 전반기
개원 및 원구성
(의장 정운상, 부의장 박장수)

2004. 6. 30.
제4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의장 박정철, 부의장 문필수)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일반 현황

의원 현황



윤순옥 의장



황선호 부의장



최영보 의원



송진욱 의원



여현정 의원



지민희 의원



오혜자 의원

■ 담당분야 및 담당지역 현황

| 의원 명 | 담당분야 (6개 분야, 32개 부서) | 담당지역 |
|---------|---|-------------------|
| 윤순옥 의장 | 총 괄 | 총 괄 |
| 황선호 부의장 | 문화, 관광, 교육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 양서면 서종면 |
| 최영보 의원 | 복지, 보건, 민원 (복지정책과, 지역돌봄과, 주민복지과, 민원바로센터, 토지정보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 옥천면 양서면 |
| 송진욱 의원 | 지역개발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수도사업소) | 용문면 청운면 |
| 여현정 의원 | 환경, 도시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환경과, 환경사업소) | 개군면 양동면 단월면 |
| 지민희 의원 | 일자리, 산업, 경제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 강상면 강하면 지평면 |
| 오혜자 의원 | 군민자치, 행정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데이터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 양평읍 옥천면 |

의회사무과 현황

■ 직제



■ 정·현원 현황

| 구분 | 계 | 행정 5급 | 행정·세무 농업·시설 6급 | 행정 7급 | 속기 7급 | 운전 7급 | 행정 8급 | 운전 8급 | 행정 9급 | 운전 9급 | 비고 |
|----|----|-------|-------------------|-------|-------|-------|-------|-------|-------|-------|----|
| 정원 | 15 | 2 | 3 | 4 | 2 | 1 | 1 | - | 1 | 1 | |
| 현원 | 15 | 2 | 3 | 4 | 2 | 1 | 1 | 1 | 1 | - | |

※ 정원 외 : 3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 공무원 2]

■ 청사현황

(단위 : m²)

| 시 설 명 | 면 적 | 시 설 명 | 면 적 |
|------------------|--------|------------------------|--------|
| 의 장 실 | 86.12 | 사 무 실 | 92.40 |
| 부의장실 | 41.76 | 자 료 실 | 45.36 |
| 의원사무실 (별관 3층) | 205.13 | 부 속 실 | 28.92 |
| 본회의장 | 173.19 | 열린의회실 | 69.49 |
| 위원회실 | 102.96 | 기 타 (화장실, 복도, 계단 등) | 299.13 |

의회 구성



윤순옥 의장

선거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황선호 부의장

선거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최영보 의원

선거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송진욱 의원

선거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여현정 의원

선거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민희 의원

선거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오혜자 의원

선거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주민의 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입법기관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기능을 담당한다.



■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정책 결정자, 지역의 대표자 및 갈등 조정자, 행정 감시자로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및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 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

조례안 의결, 예산안 확정, 사용료 분담금 등의 부과징수 등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 정책문제의 발견 제안자로서의 역할

건의안, 결의안, 청원채택과 질문/질의, 감사, 조사 시 대안제시

■ 집행의 감시/독려자로서의 역할

행정사무감사·조사, 자료요구 및 출석요구, 지방행정에 대한 질문

■ 분쟁조정자와 민원해결자로서의 역할

지역주민 민원해결(진정서 처리)과 청원심사·채택





집행기관

조례등 의안제출

조례 등 의안제출
재의요구,
회의소집요구



행정사무감사 · 조사,
동의, 승인, 보고,
출석요구

의 회

의 결

조례제정 · 개정 · 폐지
예산결산 심의확정 승인
청원 · 진정처리

처리결과
통보

선거,
청원,
진정



주 민

■ 의결권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서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의회는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 예산을 심의·확정, 결산을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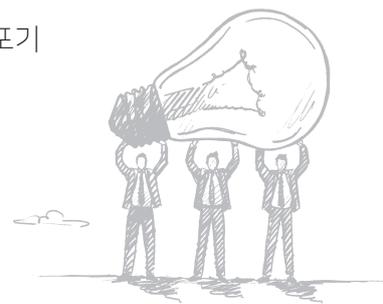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동의권

동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업무에 대하여 의회가 사전에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한이다. 동의 받을 사항을 동의 없이 행사하게 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 지방채 발행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1조)
- 보증채무부담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 승인권

승인권은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한이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이 선결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다.

- 결산의 승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 예비비 지출승인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러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 자율권

자율권이란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의회의 자율권으로는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질서의 유지,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위원회구성 및 의안 발의권 등을 들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 서류의 제출과 준수 또는 그 보조 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정례회의 중 9일 이내 군정 전반 감사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정 사안 조사

■ 서류제출 요구권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출석요구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나 질문하기 위하여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폐회 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

■ 청원처리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 의견 표명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표명권은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 의회 운영

- ◎ 주민의 대표기관 · 의결기관으로서 본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며,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의사 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다.

| 구 분 | 집 회 일 | 주 요 안 건 |
|--------|---------------------------------|--------------------------------|
| 1차 정례회 | 매년 6월 1일 (단 지방선거실시 연도는 9월중) | 결산 및 예비비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
| 2차 정례회 | 매년 12월 1일 | 예산안 심의 · 의결 군정질문 |
| 임 시 회 | - 군수 요구 시 -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시 | 예산(안) · 조례(안) 일반안건 |

※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본회의

-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결정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의결, 선임, 결정한다고 할 때 이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 특별위원회

- 조례안 및 청원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이 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필요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다른 특별위원회와 달리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시 반드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근거 :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 소관사항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 결산안 심사, 예비비 지출 승인 등

■ 윤리특별위원회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 위원회를 둔다.
 - 근거 :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
 - 소관사항 :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요구에 대한 심사 등

의회회의

개의 선포

-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

보고

- 보고자 : 의사팀장 회의록에 게재하는 일반적인 사항

발언

- 신상발언 또는 의사진행 발언

안건상정

- 상정안건 :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
- 상정방법 : 의사 일정순서에 따라 1개 안건씩 상정이 원칙. 필요시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가능

제안설명

심사보고

- 심사보고 : 보고자-상정안건의 소속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소속위원
- 제안설명 : 보고자-제안자

질의 토론

-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신청
- 토론 신청시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통지
- 토론시 반대자 먼저 발언,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 허가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질의와 토론 생략 가능

표결

-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표결방법 : 이의유무, 양평균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투표

표결결과 선포(의결)

산회 선포



방청 및 청원, 진정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방청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 속에서 성숙합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참여가 더 없이 필요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청을 바랍니다. 또한, 비회기중이라도 의회시설 견학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의사팀 ☎ 770-2527)

■ 청원

의회에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양평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에 서명, 날인 후 양평군의회사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재판의 간섭 및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과 의사팀 ☎ 770-2527)

■ 진정

진정서는 군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약서, 탄원서, 문의서, 의견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의정팀 ☎ 770-2523)

■ 양평군의회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본관 3층

■ 양평군의회 홈페이지 주소

<http://www.ypcouncil.go.kr>



■ 의원 전화번호

| 성명 | 소속정당 | 사무실 |
|---------|--------|--------------|
| 윤순옥 의장 | 국민의힘 | 031-770-2500 |
| 황선호 부의장 | 국민의힘 | 031-770-2501 |
| 최영보 의원 | 더불어민주당 | 031-770-2532 |
| 송진욱 의원 | 국민의힘 | 031-770-2535 |
| 여현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031-770-2531 |
| 지민희 의원 | 국민의힘 | 031-770-2534 |
| 오혜자 의원 | 국민의힘 | 031-770-2533 |

■ 양평군의회 대표전화

- 의회사무과장 031-770-2506
- 수석전문위원 031-770-2510
- 전문위원 031-770-2511
- 의정팀 031-770-2521
 - 인사 031-770-2544
 - 의정홍보 031-770-2523
 - 서무,회계 031-770-2522
 - 의장수행 031-770-2524
- 의사팀 031-770-2526
 - 회의운영 031-770-2527
 - 속기, 의안관리 031-770-2528
- 의장 부속실 031-770-2540
- 의원 부속실 031-770-2541
- 의원사무실 팩스 031-770-2823
- 의회사무과 팩스 031-770-2820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양평군의회

www.ypcouncil.go.kr